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규정(안)

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 탐색을 위해,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창작, 창업, 융합등의 프로젝트형 진로탐색학점제도를 운영한다.

제2조(진로탐색학점제) 진로탐색학점제도는 학기 단위로 진로탐색과목의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진로탐색학점제 운영) 진로탐색학점제는 다음 각 호의 운영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학기별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계획 수립
2. 학기별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공지
3. 진로탐색학점제 참여 학생 계획서 신청 및 접수
4. 진로탐색학점제 대상 학생 선발
5. 진로탐색학점제 대상 학생 사전 교육
6. 진로탐색학점제 수강과목 수강신청
7. 계획에 따른 진로탐색학점제 수행
8. 진로탐색학점제 수행 점검(활동보고서) 및 관리
9.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10.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심의 및 학점 인정 처리

제4조(진로탐색학점제 교과목 개설) ① 진로탐색학점제의 교과목인 「CK창의프로젝트」을 창의 융합스쿨에 개설한다.

제5조(진로탐색학점제 교과목 수강자격) ① 진로탐색 교과목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 할 수 있다.

② 진로탐색학점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수강 할 수 있다.

제6조(진로탐색학점제 교과목 학점인정) ① 「CK창의프로젝트」 교과목은 모든 수강신청 학생들에 대해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하며, 15학점을 인정한다.

제7조(성적평가 및 이수) ① 「CK창의프로젝트」 교과목은 P/F로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② 「CK창의프로젝트」과목의 성적평가는 활동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발표회의 발표까지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③ 「CK창의프로젝트」 교과목 수강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1. 활동보고서를 4주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위원회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우리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④ 수강학생이 중도의 프로젝트를 포기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개강후 3주차 이전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 : 다른 과목으로 수강신청을 변경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강후 3주차 이후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 : 「CK창의프로젝트」과목의 미이수로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①진로탐색학점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점인정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진로탐색학점제 기본정책 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대상학생 선발 및 점검,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로탐색학점제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수강 학생에 학점인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진로탐색학점제에 관한 사항

제10조(지도교수 및 자문단) ①진로탐색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책임지도교수와 산업체 자문단을 둔다.

- ②지도교수는 각 학생의 면담을 통해 활동계획서를 확인하고 지도 한다.
- ③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 활동보고서를 점검하고, 피드백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④산업체자문단은 대상학생에 대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자문하고 지도한다.

제11조(준용)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대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